

계절학기 운영규정

- 제정 : 1987. 3. 1.
- 개정 : 2008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9. 3. 1.
- 개정 : 2020. 3. 13.
- 개정 : 2020. 12. 3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2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 계절학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설시기)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수업시간수)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1학점에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개설과목당 1일 강의시간은 4시간 이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개설과목 및 폐강기준)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과목 중 15명 이상의 신청과목을 개설하되, 15명 미만의 신청과목은 폐강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명 미만이라도 개설 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학점) 계절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은 2020학년도부터 4학점 이내로 한다.<개정 : 2020.3.13.>

제6조(수강대상자) 수강대상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시 본 대학 재학생에 한한다.

제7조(재수강의 제한) 재수강시에는 기 취득한 성적이 C⁺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고 재수강 시 승급가능 성적은 A⁰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제8조(수업, 시험 및 성적인정) ① 계절학기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계절학기의 시험은 1회 실시하며, 성적평가는 출석20%, 평소20%, 시험60%로 한다.

③ 계절학기의 성적은 A급까지 평가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5-0-1 계절학기 운영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